

의안번호	2209792
의 퇴 인	고동진 의원
회 답 일	2025.07.21.
추계번호	25C2278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0조의2 (학교 디지털 문해 교육의 진흥)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초·중등학교”라 한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제2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재량규정
		(제3항) 국가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은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초·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의무규정
2	안 제10조의3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의 설치·운영)	(제1항) 교육부장관은 초·중등학교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진흥하기 위하여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재량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10조의2 (학교 디지털 문해 교육의 진흥)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10조의3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의 설치·운영)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①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②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반영하도록 하

며, ③교육부장관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개정안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이 존재하여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 (안 제10조의2제2항) 개정안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동일 취지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이므로 사업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산출이 어려움

- 교육부는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을 교부하고 있으며 '25년 8억 7,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됨
- 교부금을 통해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 디지털 리터러시 캠프 개최, 우수 수업 사례 공모전 등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참고로, 각 시·도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한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참고자료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조례 현황

○ (안 제10조의2제3항)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초·중등학교의 교육과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나, 이는 기존에 추진 중인 사항에 해당하여 추가재정소요를 발생시키지 않음

- 각 학교는 현행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에 근거하여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¹⁾
- 또한, 교육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디지털 소양²⁾을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교과에 반영하였으며, 이를 기초소양 중 하나로 강조한 바 있음³⁾

1)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10조(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 ① 학교등의 장은 학생이 원격교육에 자기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 및 활용 능력 향상
2.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이해 및 비판 능력 향상
3.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사회참여 능력 향상
4.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민주적 소통 능력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정보통신매체 또는 정보통신기기에 신체적·정신적으로 과도하게 의존하지 아니하도록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른 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부 보도자료는 디지털 소양을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활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함

3)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2021.11.24), 13p

- (안 제10조의3)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가 설치·운영되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해당 센터의 운영 방식, 구체적인 사업 내용 등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에 한계가 있음

- － 참고로, '20년 교육부의 설립 지원 계획에 따라 대구, 경기, 충북교육청에 설치된 학교미디어교육센터는 개정안의 학교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참고자료 2]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운영 현황

- 이에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현수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현수	02-6788-4627	jhs@assembly.go.kr

[참고자료 1] 디지털 미디어 문해 교육 관련 조례 현황

지역	조례명	공포일자
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활성화 조례	2025.6.5.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0.7.5.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진흥 조례 ¹⁾	2024.9.26.
경상북도	경상북도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 조례	2025.4.7.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 미디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023.8.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5.2.28.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지원 조례	2023.4.10.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024.3.29.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023.10.11.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2023.10.1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2.1.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25.2.28.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2022.2.21.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교육청디지털리터러시교육지원조례	2023.3.9.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디지털 역량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4.7.15.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1.9.27.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미디어 정보 식별 교육 조례	2021.2.18.
전라남도	전라남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4.8.16.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11.10.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4.12.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2023.5.1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2023.10.12.
충청남도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2023.8.10.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	2021.12.17.

주: 1) 「경상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가 2024.9.26.자로 폐지되고 해당 조례와 통합 운영되고 있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참고자료 2] 학교미디어교육센터 운영 현황

구분	설치 예산 (특별교부금) ¹⁾	주요 사업	개관 시기
대구광역시	102억원 (35억원)	· 연계 프로그램 운영 · 교원 미디어 문해 교육 직무연수 · 미디어교육 교사 동아리 운영 ·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 교육	'22.4.
경기도	140억원 (70억원)	· 초·중등 미디어 문해 교육 운영·지원 · 학교로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 교원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 미디어 문해 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24.6.
충청북도	179억원 (35억원)	· 학생 대상 미디어 프로그램 운영 · 교원 미디어 교육 역량 강화 · 영상콘텐츠 개발·보급	'24.9.

주: 1) 교육부는 '20년 사업 심사를 거쳐 '21년 특별교부금을 교부하였음
 자료: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제출자료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